

교원연봉제운영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~2 (생략)</p> <p>3. "제수당" 이라 함은 자녀학비보조수당, 초과강의료, 주거안정수당, 기타 수당을 말하며, 인상을 적용 및 기본연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</p>	<p>제 3 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~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"제수당" 이라 함은 자녀학비보조수당, 초과강의료, 주거안정수당, 육아휴직수당, 기타 수당을 말하며, 인상을 적용 및 기본연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</p>	육아휴직 수당 신설
<p><신 설></p> <p>제 21 조의 3(기타수당) ① 교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시수당, 강좌개발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 21 조의 3(육아휴직 수당) 정관 제 47 조제 7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제 21 조의 4(기타수당) ① 교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시수당, 강좌개발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